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· 출력되었습니다
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.게시일자 : 2020-04-24

서 울 북 부 지 방 법 원

제 3 민 사 부

판 결

사 건	2019나32413 부당이득금
원고, 항소인	A
	소송대리인 법무법인 [redacted]
	담당변호사 [redacted]
피고, 피항소인	[redacted]시
	소송대리인 변호사 [redacted]
	소송복대리인 변호사 [redacted]
제 1 심 판 결	서울북부지방법원 2019. 3. 22. 선고 2018가단136126 판결
변 론 종 결	2019. 11. 5.
판 결 선 고	2019. 11. 26.

주 문

1.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.

2.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

청구취지 및 항소취지

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· 출력되었습니다
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.게시일자 : 2020-04-24

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. 피고는 원고에게 159,039,24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. 10. 1. 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%의,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%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
이 유

1. 제1심 판결의 인용

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,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을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 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.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,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,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.

2. 추가하는 부분

○ 제1심 판결문 제2쪽 제14행 '이라 한다' 다음에 아래와 같은 부분을 추가한다.

원고는 제1심 제2회 변론기일에서 '최초 과세처분은 G가 2010. 11. 15. 적법하게 수령한 사실'을 자백하였다가, 이 법원에 이르러 G는 C의 직원이 아니고, C은 최초 과세처분을 송달받은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여 위 자백을 취소하였으나, 갑 제10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위 자백이 진실에 어긋나고 착오로 말미암은 것이라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,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, 위 자백취소는 효력이 없다.

○ 제1심 판결문 제3쪽 제1행과 제2행 사이에 아래와 같은 부분을 추가한다.

라. 원고는 2015. 12. 29. 피고에게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였으나, 2016. 3. 3. 청구기한이 경과하였다는 이유로 각하결정을 받았다.

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· 출력되었습니다
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.게시일자 : 2020-04-24

○ 제1심 판결문 제6쪽 제12행 '아무런 법적 근거도 찾을 수 없다' 다음에 아래와 같은 부분을 추가한다.

원고는 제1심에서 '원고가 ㈜C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제3자가 된지 6년 8개월[1]이 경과하여 ㈜C의 행위에 대하여 어떠한 법적 권한과 책임이 없고, 이 사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에 대하여 알 수 없었음에도,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은 과잉금지원칙, 조세평등주의, 실질적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위배된다'고 주장하였음에도 제1심 판결이 이에 대하여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아니한 것은 심리 및 판단을 누락한 것이라고 주장하나, 원고의 위 주장은 결국 법인의 과점주주 등이 부담하는 제2차 납세의무의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에 관한 법률상 주장에 불과하여 이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판단 누락이라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제1심 판결은 이에 대하여 필요한 판단을 하였으므로,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.

○ 제1심 판결문 제8쪽 제7행과 제8행 사이에 아래와 같은 부분을 추가한다.

원고는 또, 이 사건 처분의 근거규정인 구 지방세법(2010. 3. 31. 법률 제10221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) 제22조 본문 및 제2호 가목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배하여 원고의 평등권, 재산권을 침해하고, 실질적 조세법률주의 원칙에도 위배되는 등 헌법 제11조 제1항, 제23조 제1항, 제37조 제2항, 제59조에 위반되고,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무효라고 주장한다.

살피건대, 법률에 근거하여 행정처분이 발하여진 후에 헌법재판소가 그 행정처분의 근거가 된 법률을 위헌으로 결정하였다면 결과적으로 위 행정처분은 법률의 근거가

1) 원고가 주장하는 5년 8개월은 6년 8개월의 오기인 것으로 보인다.

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· 출력되었습니다
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.게시일자 : 2020-04-24

없이 행하여진 것과 마찬가지가 되어 하자가 있는 것이 된다고 할 것이나 하자 있는 행정처분이 당연무효가 되기 위하여는 그 하자가 중대할 뿐만 아니라 명백한 것이어야 하는데, 일반적으로 법률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사정이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있기 전에는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전에 행정처분의 근거가 되는 당해 법률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사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행정처분의 취소소송의 전제가 될 수 있을 뿐 당연무효사유는 아니라 할 것인바(대법원 2000. 6. 9. 선고 2000다16329 판결, 대법원 1994. 10. 28. 선고 92누9463 판결 등 참조), 가사 위 법률 조항의 위헌 여부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의 하자 유무가 달라진다고 하더라도, 그 하자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있기 전에는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라고 할 수 없어 이 사건 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,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.

3. 결론

그렇다면,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,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재판장 판사 조우연

판사 정우석

판사 김성래